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발 의 자 : 서천호 · 박충권 · 서일준
김민전 · 김재섭 · 임종득
추경호 · 우재준 · 정성국
이만희 · 조정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.

그런데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,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어 어떤 사유로 통지가 유예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상 필요성을 내세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지받

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통지유예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,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(안 제83조의2제1항)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사용 목적”을 “구체적 사용 목적(해당 당사자와의 연관성,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사유, 사건의 개요 및 진행 경과, 통신이용자정보 이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유예 사유 및 기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2.·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~ ⑧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 <u>4.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신</u> <u>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</u> <u>통지의 유예 결정이 있었던</u> <u>경우 그 유예 사유 및 기간</u> ② ~ ⑧ (현행과 같음)
--	---